◆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◆

1. 제출서류

① 연말정산 소득.공제신고서/ 간소화자료

②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**(전년도 기본공제 변동 없는 분은 제출 생략)**

③ 장애인공제 :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(수첩) 사본 제출,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제출**(전년도 공제자도 제출)**

④ 공제항목 증빙서류 → 공제내역 안내 참조(2p~3p)

⑤ 주택관련 공제항목 : 반드시 4p 참고하셔서 해당서류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⑥ 교회기부금공제 : 기부금영수증에 반드시 일련번호 표기가 되어야함, 교회소속증명서 함께 제출

⑦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(교복구입비 및 교회기부금영수증 등)

⑧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(중도입사자포함)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
2. 제출방법

① 연말정산 소득.공제신고서/ 간소화자료 :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제출

▶ 이용경로 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

▶ 제출방법(안내영상) :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bbsId=30682

▶ 안내영상이 열리지 않는 경우 주소창에 위의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

②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: 우편 및 직접제출

▶ 제출처 :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사무관리팀 양희정(☎950-5421)

3. 제출기한 : 온라인, 오프라인서류 모두 2/2(목)까지

4. 주의사항

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선택

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개별적인 조건에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, 납세자가 직접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.

→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, 별첨 자료의 공제요건을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.

→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③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전에 5쪽~11쪽의 공제요건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④ 아래에 함께 제공해 드리는 "공제내역 안내"는 국세청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전체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한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제내역 안내

<table>
<tr><th>공제구분</th><th>공제대상 및 공제금액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기본공제
(본인 · 배우자 · 부양가족 등)</td><td>•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
<table><tr><th>직계존속</th><th>직계비속</th><th>형제 · 자매</th><th>위탁아동</th><th>수급자</th></tr><tr><td>60세 이상
('62.12.31.이전)</td><td>20세 이하
('02.1.1.이후)</td><td>20세 이하
60세 이상</td><td>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
직접 양육한 위탁아동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/table>• 소득요건 :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자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
- 종합소득금액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 100만원 이하</td><td>주민등록등본
/가족관계증명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/입양사실확인서
또는
증명서/가정위탁보호확인서</td></tr>
<tr><td>추가공제
(경로 • 장애인 • 부녀자 • 한부모)</td><td>• 경로우대자공제 : 만 70세 이상(1952.12.31. 이전 출생) 1인당 100만원
• 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
• 부녀자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
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
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
• 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)
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
※ 주의 : 경로우대자, 장애인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에 한해 추가로 공제 받는 것임</td><td>주민등록등본 /
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증명서
장애인수첩사본
※
장애인증명서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제출해야함.</td></tr>
<tr><td>연금보험료 공제</td><td>• 국민 · 공무원 · 군인 · 사립학교교직원 · 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</td><td></td></tr>
<tr><td>보험료 소득공제</td><td>• 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택자금
공제산식:(㉡×40%)+㉠</td><td>• 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, 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, ㉢주택마련저축납입액
• 한도 : ㉡+㉢ = 300만원, ㉠+㉡+㉢ = 1800만원 · 1500만원 · 500만원 · 300만원
• 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
*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</td><td>4페이지
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</td></tr>
<tr><td>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</td><td>• (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) 개인연금저축 (본인명의)액 :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X 40%
(연 72만원 한도)</td><td>저축납입증명서
또는
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>소기업 · 소상공인
공제부금</td><td>•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 · 300만원 · 200만원)
•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</td><td>공제부금
납입증명서</td></tr>
<tr><td>주택마련저축공제</td><td>• 청약저축 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공제(한도 300만원)</td><td>주택마련저축
납입증명서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>신용카드사용금액
소득공제</td><td>• 공제대상 :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% 초과한 경우
-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동거입양자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(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)
- 연령제한은 없음
• 공제금액 : ① 전통시장사용분×40% + ② 대중교통이용분(상반기×40%, 하반기×80% + ③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×30% + ④ 직불 · 선불카드 사용분×30% + ⑤ 신용카드사용분×15% + ⑥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% - ⑦ a,b,c 중 1
a :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 ≤ 신용카드사용분인 경우 => 최저사용금액×15%
b : 신용카드사용분 <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 ≤ 신용카드사용분 + 직불카드 등 사용분 +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)인 경우 => 신용카드사용분×15% + (최저사용금액-신용카드사용분)×30%
c : (신용카드사용분 + 직불카드 등 사용분) <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=>
1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:
신용카드사용분×15% + (직불카드 등 사용분 +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)×30% + (최저사용금액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 등 사용분 -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)×30%
2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:
신용카드사용분×15% + 직불카드 등 사용분×30% + 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 등 사용분)×40%
* 공제한도액 : 연간 300만원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:연간 250만원, 1억2천만원 초과자:연간200만원)과 총급여액의 20%중 적은 금액
한도추가 : 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(100만원)</td><td>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
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
현금영수증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공제구분</th><th>공제대상 및 공제금액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장기집합투자증권
저축 소득공제</td><td>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연 240만원)</td><td>장기집합투자
증권저축
납입증명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고용유지중소기업
근로자 소득공제</td><td>•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%를 소득공제(연1,000만원 한도)</td><td>고용유지
중소기업
소득공제신청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중소기업취업자 감면
(청년 90%, 청년외 70%)</td><td>•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 5년), 150만원 한도 감면
• 대상 : 청년(만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</td><td>중소기업 취업자
소득세 감면신청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핵심인력
성과보상기금 감면</td><td>•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(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)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녀세액공제
(손자녀 적용불가)</td><td>• 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(30만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원)
• 출생 · 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
* 자녀세액공제 대상 :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</td><td>주민등록등본
/
가족관계증명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연금계좌 세액공제
(공제율 12% · 15%)</td><td>• 퇴직연금 · 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%)
- 50세 미만 :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)
- 50세 이상 : 연 9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6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세미만과 한도 동일)</td><td>연금납입확인서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특별세액공제</td><td>보험료
(공제율
12% · 15%)</td><td>• 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있음)를 피보험자로 하는
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,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
• 공제금액 : (보험료납입액, 100만원 한도)X12% 또는 15%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,100만원한도)</td><td>보험료
납입증명서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>의료비
세액공제</td><td>• 공제대상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없음)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
* 공제대상의료비 : 진찰. 진료.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, 치료.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구입, 보정용 안경.콘텍트렌즈구입(50만원이내), 보청기구입,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, 산후조리원 비용(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),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
(미용. 성형수술 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
• 공제금액 : [㉠(본인, 65세이상자,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- 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)X15% (난임시술비는 30%,미숙아 · 선청성이상아 20%)
(㉡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- 총급여액X3%, 700만원 한도)]X15%</td><td>의료비영수증등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>교육비
세액공제
(공제율 15%)
(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)</td><td>• 본인 : 전액(대학원포함)
•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원 제외)
• 취학전아동 · 초 · 중 · 고생 : 1명당 300만원 한도(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
•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
• 소득요건은 있으나 연령요건은 없음</td><td>교육비
납입증명서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>기부금
세액공제</td><td>• 공제대상 :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(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), 소득요건 0, 연령요건 X
<table>
<tr><th>기부금 종류</th><th>소득공제 ·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
<tr><td>①정치자금기부금</td><td>근로소득금액 × 100%</td><td>10만원 이하 : 100/110
10만원 초과 : 15%
(3천만원 초과분 25%)</td></tr>
<tr><td>②법정기부금</td><td>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</td><td rowspan="4">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
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
(1천만원 초과분 30%)</td></tr>
<tr><td>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</td>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</td></tr>
<tr><td>④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</td>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
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
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</td></tr>
<tr><td>⑤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</td>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</td></tr>
</table>
* 법정(지정)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.</td><td>기부금영수증/
종교단체의
소속증명서
또는 간소화자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월세액 세액공제</td><td>• 공제대상
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
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
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(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한다.)
• 공제율
① 총급여 5,500만원 ~ 7천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15%(한도75만원)
②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(한도90만원)</td><td>주민등록등본
임대차계약증서
현금영수증
계좌이체영수증등</td></tr>
</table>

2.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>그 밖의 소득공제</td><td colspan="2">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</td><td>세액공제</td></tr>
<tr><td>주택마련저축납입액</td><td>주택임차차입금
원리금 상환액</td><td>장기주택저당차입금
이자상환액</td><td>월세액 세액공제</td></tr>
<tr><td>공제
대상</td><td>-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
-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</td><td>-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
-국민주택규모주택을
-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의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</td><td>-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
-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
-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</td><td>-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
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4">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
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
①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
②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
③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</td></tr>
<tr><td>요건</td><td>-청약저축
(240만원 이하 납입액)
-청약종합저축
(240만원 이하 납입액)
-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</td><td colspan="2"><차입금요건>
1)대출기관 차입 시:
입주일,전입일(갱신 이주 포함)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
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</td><td>-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
-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</td><td>-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이하자
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
-전입신고</td></tr>
<tr><td>대상
주택</td><td>(`09.12.31. 이전 가입자의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능</td><td>-국민주택규모<br>-주거용 오피스텔 포함</td><td>-규모요건 삭제(`14년부터)
-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(`19년전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이하)<br>(`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+기준시가3억이하)
-오피스텔 제외</td><td>-국민주택규모
-주거용오피스텔포함
-주거용 고시원 가능
-부양가족명의의 임차주택 공제가능</td></tr>
<tr><td>공제
금액</td><td>납입액의 40%</td><td>원리금상환액의 40%</td><td>이자상환액</td><td>월세액의 10(12)%</td></tr>
<tr><td>공제
한도</td><td colspan="2">연간 300만원 한도
연 500만원 한도
(-15년이상+고정금리+비거치식분할상환 : 1800만원
-15년이상+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: 1500만원
-10년~15년미만+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: 300만원)</td><td></td><td>75만원
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</td></tr>
<tr><td>증명
서류</td><td>-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자료</td><td>-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또는 간소화자료
-주민등록표등본
-거주자 차입 시는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</td><td>-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또는 간소화자료
-주민등록표등본
-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(공시가격 알리미)</td><td>-주민등록표등본
-임대차계약서 사본
-월세액 지급 증명서류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 등)</td></tr>
<tr><td>주의
사항</td><td>-주택청약종합저축
(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익년 2월까지 제출)</td><td>-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성 및 상환 필요
-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</td><td>-무허가주택, 농가주택 포함
-사업용, 판매목적 주택 포함
-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(상속 제외)</td><td>-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</td></tr>
</table>

3.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(※ 특히, 수동발급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,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)

구 분	중점 확인사항
인적 공제	○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확인(확인서 등) ○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(1.1) 전 사망자·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
주택자금 공제	○ 거주자(개인)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-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○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-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- 등기부등본,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확인 - 국민주택규모 여부(2013년 이전 차입분) 확인 -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확인 -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, 대출조건(비거치식, 고정금리 등) 확인 -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 3억원, 2014.1.1.~2018.12.31. 차입분 4억원) 여부, -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
주택마련 저축공제	○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○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(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)
신용카드 소득공제	○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○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
연금계좌 세액공제	○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○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(공제 제외 대상)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
보험료 세액공제	○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
의료비 세액공제	○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-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○ 사내근로복지기금·보험회사(실손보험금)·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(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)
교육비 세액공제	○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(입학연도 1월~2월 까지)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○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(자녀의 대학우너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) ○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(과세제외)를 제외하였는지 확인

*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

구 분	중점 확인사항
기부금 세액공제	○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인지 확인 ○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'일련번호' 유무 확인 -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○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-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,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- '고유번호증'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- 사주, 궁합, 택일,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-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,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'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'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
월세액 세액공제	○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,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) 여부 확인 ○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○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※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.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·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